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(민홍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23

발의연월일: 2020. 6. 24.

발 의 자:민홍철・김병욱・기동민

김두관・천준호・서영교

고영인 · 안규백 · 신정훈

박성준 • 이병훈 • 이재정
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저출산·고령화와 지방 소멸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.

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국정 참여 강화와 자치입법권 확대, 자치조 직권 및 자주재정권 보장 등 지방분권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대통령과 시·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 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.

한편,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 제도는 시·도지사 협의체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는 것과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전국 시·도 행정부시장·부지사 회의 등이 있을 뿐 상시적인소통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.

이에 대통령, 국무총리 및 시·도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국가자치분권

회의를 설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평적 협력 관계를 공고히하고 지방자치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65조의2에 따라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설치하고,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,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자치분권회의를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에 관한 사항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, 사무 및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,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(안 제2조).
- 다. 국가자치분권회의는 대통령, 국무총리, 부총리, 행정안전부장관 및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등으로 구성함(안 제3조).
- 라. 국가자치분권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,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도록 함(안 제4조).
- 마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자치분권회의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 계획 및 그 이행 결과를 국가자치분권회의에 보고하여야 함(안 제6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915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65조의2에 따라 국가자치분권 회의를 설치하고,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 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국가자치분권회의의 설치 및 기능) ①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자치분권회의를 둔다.
 - ② 국가자치분권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
 - 2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, 사무 및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
 - 3.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
 - 4.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에 관한사항
 - 5. 그 밖에 지방자치 발전 및 지역 간 균형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 쳐 국가자치분권회의의 구성원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
- 제3조(국가자치분권회의의 구성) ① 국가자치분권회의는 다음 각 호의

사람으로 구성된다.

- 1. 대통령
- 2. 국무총리
- 3. 부총리
- 4. 행정안전부장관
- 5.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
- ② 국가자치분권회의의 의장(이하 "의장"이라 한다)은 대통령으로 하고, 부의장은 국무총리와 「지방자치법」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시·도지사 협의체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, 시·도지사 협의체의 대표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국가자치분권회의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6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가 배석할 수 있다.
- ④ 그 밖에 국가자치분권회의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4조(국가자치분권회의의 운영) ① 국가자치분권회의는 정기회의 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.

- 1.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2. 국가자치분권회의의 구성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
- ④ 국가자치분권회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자치분권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- ⑥ 그 밖에 국가자치분권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5조(실무협의회) ① 국가자치분권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조정하고 의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.
 - ② 실무협의회는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 구성원이 지명하는 차관급 공무원과 제3조제1항제5호의 각 구성원이지명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구성한다.
 -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시·도지사 협의체의 대표자가 시·도지사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한다.
 - ④ 실무협의회는 국가자치분권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·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 등에게 자료제출 및 의견개진 등을 요구할 수 있고, 안건에 대한 이해관계자

또는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- ⑤ 그 밖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6조(심의 결과의 활용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협력회의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 계획 및 이행 결과를 협력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 결과를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향후 조치 계획을 협력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